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76 발의연월일: 2021. 8. 10.

발 의 자:서삼석·김승남·김영주

김원이 • 민형배 • 박 정

송재호・신정훈・안호영

어기구・오영환・위성곤

윤재갑 • 이개호 • 장경태

주철현 · 허종식 · 홍성국

의원(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함께 강조·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과는 달리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단 3개 조문(제5조, 제15조 및 제16조)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인의 재해로부터의 보호·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 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 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4호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업 작업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법률 제 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 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제1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으로 한다.

4.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험사업자) ① (생 략)	제7조(보험사업자) ① (현행과 같					
	<u>수</u>)					
② 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	②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						
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					
	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					
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에 관					

4. (생략)

- ③ (생 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 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 가하여 그 결과를 <u>기본계획</u>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생략)

	한	운	영	성고	<u> 가,</u>	문기	세전] [<u> </u>	개
	<u>선</u> 1	방인	-에	관	한	사형	<u></u>			
<u>5.</u>	(현	현행	제	4호	와	같-	음)			
3	(रॅ	현 행	과	같-	음)					
4	_									
						·기호	 	없 c)]	국
<u>회</u>	소	:관	상	임위	원	회어	〕ズ]출	하	고,
<u>기</u>	본	계획						•		

⑤ (현행과 같음)